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1

2023서울조정450·451·452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인터넷 보도 이후 신청인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지면에 동일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B 시의원이 ○○시청 시정업무보고 과정에서 전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재채용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A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한 사유를 회신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내용증명을 받은 B 시의원은 A 씨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에 대한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드론을 이용한 옥외 광고물 점검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업무일지 작성 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 작성을 계획 중에 있었으며, B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신청인의 퇴직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B 시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도 불이익이 있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의 인터넷 보도 이후 사실과 다른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면 보도까지 했다며 손해배상을 원했다. 중재부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금액이 조정된다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재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시청 일반임기제 직원이었던 A 씨가 ○○시의원에게 개인정보법(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X일 B 시의원에 따르면, A 씨가 X월 XX일 건축주택국 시정업무보고 시 000의 채용을 막겠다 말했다고 000 채용 안 되는 게 이번 일을 해결하는 거다. 또한 채용을 시장님께 물어보겠다 등 의원님의 발언을 C 팀장을 통해 들었다며 의원님께서 20XX년 제X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한 000 채용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20XX년 X월 X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시의원은 “실명이나 이니셜 등 아무것도 거론한 것이 없는데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시청 前 임기제직원, 채용 관련 부당한 ‘처사’…시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내」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 시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응시자 A 씨에 대해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씨는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B 시의원은 A 씨의 퇴사 이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 씨는 “시정을 어지럽히거나 업무에 미흡·미진한 점은 없었다. 또한, 드론 점검은 전국 최초 사례로 20XX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시 정책홍보 및 방송사의

요청, ○○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알리고 확산시키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으며,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 점검 매뉴얼과 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고 20XX년도에 옥외광고물 안전전문가, 옥외광고센터와 협의하여 일지, 점검표 등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주간신문 2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 언론사는 20XX. X. XX. (X) 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2**2023서울조정1835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 (일부 열람차단, 손해배상 30만 원)

명시적 동의 없이 녹음된 신청인의 음성을 유튜브에 공개한 보도와 관련, 보도 내용 중 음성이 포함된 부분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 △△ 사기분양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집단대출을 내준 은행의 관계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내보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나 녹취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음성변조 등의 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유튜브에 전화통화 내용과 신청인 음성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인터뷰 내용의 인용 동의를 받았고,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음성권은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할 권리로, 신청인은 인터뷰 내용의 인용에 동의한 것이지 음성이 공중에 전파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신청인의 음성 삭제 및 3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이런 가운데 □□□□은행은 수분양자에게 잔금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며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시공사가 이자를 상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행은 투자자들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록시켰다. 투자자들은 잔금대출에 관한 약속서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은행 측은 연대보증인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닌 수분양자가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관계자는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신용 관리 대상자 등록된다”고 다 안내를 드렸다”며 “(시공사에도) 가압류를 다 걸었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를 해달라 아니면 대위 변제 요청은 다 해놓은 상태다”고 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 X. XX.(X) 24:00까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음성이 보도된 부분을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 X. XX.(X) 18:00까지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3

2023서울조정2784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500만 원)

언론사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명인이 연루되어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유명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도와 함께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은 피의자가 아니라 동생인 자신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기사를 삭제하긴 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이 다른 인터넷 기사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이 양산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피의자에게 동생이 있는지 몰랐고, 피의자가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여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식별처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 신청인의 연락 후 피신청인 언론사가 즉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 점, 손해배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5백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3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각각 취하(기사수정),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손해배상(3백만 원)으로 피해가 구제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심리 중 타 사건에 병합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진취하하여 종결됨

제1부 언론조정원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판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본안심리 전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년 XX월 X일까지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금 5,000,000원정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